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8. 20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8.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99. 8.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자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종욱)

가. 제안이유

○ 99.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의 개편과 그간의 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위임사항
 - 현 행 : 231건(구 219건, 동 10건, 의회 2건)
 - 조 정 : 42건(삭제 9, 신설 22, 명칭 및 내용변경 11)
 - 조정결과 : 244건
- 조정되는 위임 세부사항

실·과·소·명	조 정				조 정 내 용	사 율
	계	변경	삭제	신설		
계	42	11	9	22		
총 무 과	3			3	○기구조정으로 소관사무 소속 변경 •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	
민방위재난관 리 과	3		3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로 인하여 총무과로 업무이관

실·과·소·명	조 정				조 정 내 용	사 유					
	계	변경	삭제	신설							
<table border="1"> <tr> <td>소계</td> <td>2</td> <td></td> <td>2</td> <td></td> </tr> </table>	소계	2		2							
소계	2		2								
시민복지과	1		1		○구청장 업무→시장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구에서 보던 보조금지원 및 정산업무를 시청으로 이관 일원화					
	1		1		○구청장 업무→시장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변경 또는 중지 등	○구에서 보던 생보자보호의 변경 또는 중지업무를 시청으로 이관 일원화					
여성복지과	7	7			○구청장 업무→시장 ·민간의 범위 중 개인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법인·단체는 시청에 처리	○구에서 보육시설 국고보조사무 중 민간분야 개인만 구청에 남기고 ○법인과 단체는 시청으로 이관					
<table border="1"> <tr> <td>소계</td> <td>10</td> <td>1</td> <td></td> <td>9</td> </tr> </table>	소계	10	1		9						
소계	10	1		9							
문화예술과	1	1			○기구 명칭변경 ·문화체육과→문화예술과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명칭 변경					
	9			9	○환경위생과 업무를→문화예술과로 이관 ·유기장업을→유원시설업으로 변경하여 업무 처리	○환경위생과 소관사무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중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6호에 유원시설업으로 전문 개정하여 신설					
<table border="1"> <tr> <td>소계</td> <td>13</td> <td></td> <td>3</td> <td>10</td> </tr> </table>	소계	13		3	10						
소계	13		3	10							
환경위생과	3		3		○기존(공중위생법) ·위생처리업(단, 유기장업은 문화예술과로 이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99. 2. 8)으로 공중위생법 적용범위 축소					

실·과·소·명	조 정				조 정 내 용	사 유
	계	변경	삭제	신설		
환경위생과					<p>○공중위생법 적용시 위임사무명 제3호의 단위사무명 중 카, 파, 하항을 삭제</p> <p><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 폐쇄조치 중 •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처리 • 하.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 등 	<p><참고></p> <p>※구에 위임된 업무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하여 공중위생법에서 일부 관장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부 관장하는 사항임</p>
	7			7	<p>○신설(공중위생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용시설 • 제외대상 : 위생처리법 	○구 위임사항으로서 공중위생법상 적용해 오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위임사무
	3			3	<p>○신설(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위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및 보고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업장의 배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오염을 사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에 위임 추진

실·과·소·명	조 정				조 정 내 용	사 유
	계	변경	삭제	신설		
교통행정과	2	1	1		○구청장 업무를→시장 •시로 올라오는 업무내 용 : 노상·노외(공영주차 장 제외)주차장의 주차 요금 징수	•노상·노외 주차요금 징 수를 시로 이관 효율적 인 업무 수행
	1		1			
	1	1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내 용 변경 •노외주차장 신고수리→ 노외주차장 통보수리	•상위법인 주차장법(제 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통보로
농업기술 센 터	1	1			○기구명칭 변경 •농산지원사업소→농업 기술센터	○행자부 권고안으로 농산 지원사업소를 직속기관으 로 합과 동시에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
녹지공원과	1	1			○기구명칭 변경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녹지공원과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00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5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현 “농산지원사업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려는 안을 현 행대로 “농산지원사업소”로 하기로 의결하였기에,

○ 본 조례안의 실과소 명칭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지원사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구 위임사항의 실과소별 명칭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산지원사업소”로 변경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위임사항) [별표]의 실과소별란의 실과소 명칭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산지원사업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위임사항)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농업기술 센 터		(생 략)			농산지원 사 업 소		(개정안 과 같음)		

[수정안 포함]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동장 및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동장 및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적 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조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실과소별란 시민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와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6호에 대하여는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의 관할구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청장이 수행하고 나머지 동은 동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조 [별표] 2. 동 위임사항 중 실과소별란 부과2과의 위임사무명 제1호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동장(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은 제외한다.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감사실	1. 기강감사	가. 구 및 동에 대한 기강감사(정기, 수시)	·부천시자재감사규칙 제4조제3항	구청장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감사실	2. 구·동 공무원의 문 책	가. 처분이첩, 자체조사 사항에 대한 문책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6조(행정자치부훈령 제381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구청장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임용 에 대한 다음의 권 한	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직위부여권) 나. 5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직위부여권) 다. 구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 6급 및 7급은 가명부→ 시명부에 통합) ·장계집행, 직위해제 ·승급, 휴직, 복직, 면직, 겸임, 사보해제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단, 8급→7급은 시장이 인원조정) ·대우공무원 선발 마.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장계집행,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구청장
	2. 회계직공무원 임명		·지방재정법 제112조	
	3. 민방위기술지원대	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3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0조	
	4. 민방위대 정기검열	가. 민방위대 정기검열(미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5.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 료 부과·징수	·민방위기본법 제34조제2항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기업지원과	1.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나. 판매사업, 저장소의 사용(개시, 휴지, 폐지, 재개) 신고 다.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지위 승계신고 라.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허가의 취소 등 마. 위해방지 조치 신고(지장자, 판매자 또는 사용자) 등 바. 사업자 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사.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아. 고압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자. 고압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제5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4조제2항 ·동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20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3조	구청장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가.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나.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 다.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의 사용) 개시, 휴지, 폐지, 재개 등의 신고 라.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지위 승계신고 마.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의 취소 등 바. 사업자 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신고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2항, 제7항 및 제5조 ·동법 제3조제3항, 제7항 및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9조	

성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기업지원과		<p>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위 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p> <p>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 태료 처분</p>	<p>·동법 제32조</p> <p>·동법 제48조</p>	구청장
시민복지과	1. 외국인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p>가. 외국인등록표 작성 및 관리</p> <p>나. 체류지 변경의 신고</p>	<p>·출입국관리법 제34조</p> <p>·출입국관리법 제36조</p>	구청장
	2.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생활보호법 제14조	
	3. 요보호자의 생계 보조		·생활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4. 보호비용의 징수		·생활보호법 제39조	
	5.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	<p>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p> <p>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도·지시</p>	<p>·생활보호법 제17조, 제19조</p> <p>·생활보호법 제21조, 제22조</p>	
	6. 취로사업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2조	
	7. 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	<p>가.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작성 보관 관리</p> <p>나. 의료보호증 발급</p> <p>다. 의료보호증 변경 확인</p> <p>라. 의료보호증 재발급</p> <p>바. 의료보호증 회수</p>	<p>·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4조</p> <p>·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p> <p>·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7조</p> <p>·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p> <p>·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9조</p>	
	8. 구호에 대한 다음 의 권한	가. 요보호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 조	
여성복지과	1. 아동보호	<p>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p> <p>나.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조치</p>	<p>·아동복지법 제10조</p> <p>·동법 제12조</p>	구청장

성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여성복지과		다. 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확인 및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 조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구청장
	2. 보육시설 중 민간·직장 및 가정보육시설(다만 법인, 단체는 제외)	가. 설치신고 나. 변경신고, 수리와 결과보고 다. 폐지, 휴지의 승인 또는 신고 라. 폐쇄 등 마. 행정처분 등 바. 비용의 보조 사. 비용보조에 대한 보고와 검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 제29조	
여성복지과	3. 노인보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상담 및 입소 조치된 자의 관리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감독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용 보조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항 ·노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구청장
	4.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노인복지회판례외)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폐지, 휴지신고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라. 노인여가시설의 비용수납 및 청구 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법 제43조제2항 ·동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여성복지과	5. 경로연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 나. 경로연금지급대상자 관리 및 지원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노인복지법 제11조	구청장
	6.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장신고 나. 납골증명 다.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제2조	
문화예술과	1. 공연	가. 공연신고	·공연법 제14조	구청장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증 교부 및 갱신교부 라. 폐업 마. 등록취소 등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 청문 아. 폐쇄 등 수거조치 자. 벌칙(고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제33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신고 나.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 등의 취소 다. 관광사업의 양수 등 라. 등록취소 등 마. 폐쇄조치 등 바. 과징금의 부과 사. 청문 아. 보고, 검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72조 ·동법 제73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문화 예술과		자. 과태료	·동법 제81조	구청장
환경 위생과	1.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식품집객업소의 등급 설정	·식품위생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구청장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식품집객업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나. 출입·검사·수거 등 다. 조건부 영입허가 및 취소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허가의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5조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 의 권한(단, 시장의 권한 중 적용대상에 열거된 업 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 2호 중 다목의 위생처리업	가. 시설기준 및 등급설정 나. 영입의 허가 및 신고 다. 영입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라. 영입승계 마. 영입의 계속 등(휴업, 폐업, 재개업) 바. 출입·검사 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아. 행정처분 자. 청문 차. 폐쇄조치 등 카. 과징금 처분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중위생법 제3조 ·동법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5조의2 ·동법 제44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환경 위생과	4.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 시장의 권한 중 적용 대상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및 공중이용시설	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통보 나. 보고 및 출입검사 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마. 청문 바.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사.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2조, 제23조	구청장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관리대상업무: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한함).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및 보고 나.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4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도시과	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행위허가 등	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10,000㎡ 미만, 녹지지역 제외) 나. 토지형질변경 등의 단속 다. 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라. 개발예정구역 내의 법령위반공사 중지 및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78조	구청장
	2.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판독 조치보고 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상 및 표식의 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도시과		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 아, 부, 수목 제4호, 제5호, 제5의2호, 제6호, 동조제3항)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제27호) 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감시초소 설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8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7조	구청장
3. 토지거래의 규제		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용도별 면적 이하의 신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2항	
4. 토지거래계약신고		가.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수리 나. 토지거래계약 신고서 계약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한 조치의 권고 및 보고 다.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제1항, 제3항 ·동법 제21조의8제1항, 제3항 ·동법 제21조의14제1항, 제2항	
5.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동법 제21조의3제5항 ·동법 제21조의14	
6.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또는 열람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나. 토지이용계획 열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의2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7.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동호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제4호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도시과		<p>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p> <p>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가설천막</p>	<p>·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p> <p>·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p>	구청장
도로과	1. 도로의 공사와 유지	<p>가.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p> <p>나. 도로의 공사(12m 이하 도로의 신설에 관한 공사)</p>	·도로법 제24조	구청장
	2.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p>가.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p> <p>나.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3.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가. 도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동법 제31조	
	4.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가.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33조	
	5.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가. 비관리청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 허가	·동법 제34조	
	6. 도로의 점용(굴착 및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포함)허가	<p>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p> <p>나.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p> <p>다.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p> <p>라.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p> <p>마. 도로점용료의 감면</p> <p>바.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p>	<p>·동법 제40조</p> <p>·동법 제41조</p> <p>·동법 제42조</p> <p>·동법 제43조, 제44조</p> <p>·동법 제44조</p> <p>·동법 제45조</p>	
	7. 도로개설의 토지 사용 또는 수용 (노폭 12m 이하)	가. 도로공사 시행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동법 제49조의2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도로과	8.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가. 필요한 장소에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동법 제52조	구청장
	9. 도로손해자 부담금 징수	가. 도로손해자에 대한 수선 또는 유지비용	·동법 제67조	
	10. 도로점용 공사비 및 비관리청 시행의 공사비 부과 징수	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공사비용의 예치 나. 비관리청 시행 도로공사와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동법 제68조 ·동법 제70조	
	11.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가. 법령위반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변경,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	·동법 제74조	
	12. 도로의 무단 점용	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위임사항에 한함)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수리	·동법 제80조의2 ·도로법 제86조의2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동법 제131조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동법 제131조제3항, 제4항	
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사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구청장
	2. 주·정차 단속조치	가. 불법 주·정차 단속 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다.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수리	·동법 제102조의2 ·동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동법시행령 제72조의3, 제72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3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교통행정과	3. 노상·노외주차장 관련 업무	가. 노상·노외(임시)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제외) 주차장의 관리 다.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라. 노외주차장 통보수리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동법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제16조	구청장
건축과	1. 건축민원 등에 관한 사항	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당해 신청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고, 설계변경시에는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업무 라. 적용의 완화(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마.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바. 다른 법령의 배제(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자.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신고	·건축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8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5조의2 ·건축법 제6조 ·건축법 제23조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제27조	구청장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건축과		차.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카.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타.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한 위치지정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제29조 · 건축법 제31조 · 건축법 제35조	구청장
	2. 건축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다.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라. 보고 및 검사업무 마. 과태료의 부과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단속	· 건축법 제69조 · 건축법 제7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 건축법 제74조 · 건축법 제76조 · 건축법 제82조 · 건축법 제83조 · 주차장법 제19조의4	
	3. 건축물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신고의 수리 나. 가설건축물 신고서 수리 다.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9조 · 건축법 제15조제2항 · 건축법 제72조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모집공고 승인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녹 지 공원과	1. 도시공원관리	가. 도시공원의 관리 (단, 구 관할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미시설공원) 나. 녹지의 관리 (단, 구 관할구역 내 녹지지역) 다.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단, 구 관리 어린이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법 제5조 ·동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8조 및 제12조의2	구청장
	2. 산림자원보호	가.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신고)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다. 입산신고 라.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 마. 산지경화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등 바. 주민동원명령 및 진화 사. 산불진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아. 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산림법 제90조 ·동법 제97조, 제99조 ·동법 제98조 ·동법 제100조제2항 ·동법 제100조의3 ·동법 제102조 ·동법 제102조의3 ·동법 제125조	
	3. 야생조수보호	가. 유해조수 구제허가 나. 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 조수 인공사육 허가(신고) 라. 박제업 등록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동법 제21조제4항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농산 지원 사업소	1. 농지전용 신고	가.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전용 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의 부지전용 다.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시설의 부지전용 라.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동법 제37조, 제42조	구청장
	2. 농지 이용상황 등의 의 검사·조사	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	·동법 제56조	
	3. 종자매매업의 신고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종자매매업의 신고 나. 영업취소·정지 다. 청문 라. 과태료 부과징수	·종자산업법 제13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10조 ·동법 제139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동법 제159조 ·동법 제176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31조	
	4. 비료판매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료판매업 신고 나. 비료판매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다. 비료판매업신고증 재교부신청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마. 판매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동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청 소 사업소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67조,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11조	구청장
	2.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	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 정화조의 설치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운영관리, 개선명령 다.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 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마.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신고, 준공 검사 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사.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 아. 기술관리인의 신고 및 가축사육의 제한 등 자. 오수정화시설 부적합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동법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4조제4항, 제2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3조의2 ·동법 제34조, 제42조 ·동법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2. 동 위임사항

성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세정과	1.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자 수입 징수결정 나. 불용품 매각대 징수결정	·재무회계규칙 제4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동장
부과2과	1.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제39조의2	동장
징수과	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제20조, 제21조	동장
시민복지과	1. 호적과태료에 관한 사항	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단,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출생, 사망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	·호적법 제132조의2	동장
	2. 의료보호에 관한 사무	가. 의료보호증 제사용 확인 나.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3.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요보호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	
여성복지과	1.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신고 및 증명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동장
	2. 모자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3. 시의회 사무국장 위임사항

성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공무원 의회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진보 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회 사무국장